

미국 법무부

인권국

법무차관 사무실

Washington, D. C. 20530

이메일 및 등기 우편

Honorable John W. Smith (판사 존 W. 스미스)
Director (국장)
North Carolina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행정국)
P.O. Box 2448
Raleigh, NC 27602

답변: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행정국의 조사 결과 내용
신고 접수번호 171-54M-8

스미스 판사 귀하

노스캐롤라이나 사법부 내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행정국(AOC)에 대한
인권국의 조사 결과를보고하고자 이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결과보고서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 AOC 정책 및 관행은 비영어권출신
(LEP) 개인들에게 주 법원 소송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기회를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출신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AOC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OC의 이러한 정책 및 관행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소송절차에 있어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의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 매우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 중에 확인한 피해 중에는 통역사를 구하지못하여재판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 구속기간이 연장되거나 , 형사소송에서 피고를 위한 통역을 주
검사가 수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야기되는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소송당사자가 가정폭력, 자녀양육권, 주택퇴거, 임금분쟁
등기타 중요 소송을 통역사 없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법원 소송과
기타 법원 운영에의 접근을 방해하는여러가지장벽등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주의 통역사 방침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된 정책이나마그
조항대로이행하지 못한결과입니다.우리는 또한 이러한 법원정책 및 관행이
비영어권출신 (LEP) 개인들에게 끼치는피해에 대해서 AOC도 이미
알고있음을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의 출신국가 차별을 주장하는 신고를 접수한 후 이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신고사항을 1964년민권법 제6장(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1968년 범죄규제 및 치안에 관한 종합법률(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42 U.S.C. §§ 2000d ~ 2000d-7 (치안법), 42 U.S.C. § 3789d(c), 28 C.F.R. Part 42, Subpart C & D에 명시된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 법률 및 규정은 모두 연방보조금 지원을 받는 수혜기관이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및 종교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수혜기관은비영어권출신 (LEP) 개인들이 이들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에 실질적으로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조사에 관하여몇차례의서신을 통해 AOC에 통지하였으며, AOC의 관행과 정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접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OC 직원 및 간부직원과의 몇차례 회의를통해 귀 기관의 정책과연방법 상의 요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감사하는 바입니다.

AOC는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수백만달러의 보조금을 받는직접수혜기관이자노스캐롤라이나주 다른 수혜기관에게 제공되는 법무부보조금의 하부수혜자이므로연방법 제6장 (Title VI) 및 치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AOC는 법무부로부터 받는 각 연방보조금에 대한 약정서에 서명하면서 연방법 제6장 (Title VI) 치안법 및 그 규정상 요건을 준수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첨부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AOC가 비영어권출신 (LEP) 개인들에게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시스템에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였고이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방법 제6장 (Title VI), 그 시행규칙및 관련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결론의근거와 조사의 본질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귀 기관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법무부의 연방보조금지원이 즉각 중단되는 위험을 피하기위해 현재 치안법 및 해당 규정의 불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안법에 대한 공식결정이 내려지면 법무부로부터 받는 연방보조금의 회수, 보류또는종료를 유발하는 즉각적인 행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저희는 AOC의 연방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협의를개시하고 싶습니다.규정준수를 완전히 이행하기 까지는 많은시간이 걸릴 것이므로규정준수가 발효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언어이용규정의 제정 및 서면계획과 효과적인 감독을 통한 이 규정의 이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실행가능한 계약에 합의함으로써 비영어권출신 (LEP) 개인들이 법원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AOC가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규정 준수를 위하여는 적절한 자금확보가 필수적인데, 전국에 걸쳐 여러 주와 지역 법원들이 예산부족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법원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비용은 실질적인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언어지원의 필요성이 타당한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비영어권출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출신국가 차별금지 제 6장(Title VI) 관련 연방 보조금 수혜기관을 위한 지침 참조, 67 연방규정 41,455, 41,460 (2002년 6월 18일) 그러나, 재정적 압박은 인권법 요건에 대한 무조건적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저희는 조사결과 및 기타 이유로 재정부족이 연방 차별금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AOC가 합리적인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첫째, AOC 수석 부국장에 따르면 AOC는 통역서비스 확대비용을 연간 약 14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공인된 3개 예산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140만 달러는 AOC의 2011 회계연도 공인 예산 4억 6,380만 달러의 0.3%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예산계획 및 관리국 확정예산 요약 2009-2011, 200 (2010)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첨부된 결과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 결과 AOC가 통역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추가 비용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거절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통역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재정부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미영어권출신자 (LEP)들이 법원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AOC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할 심각한 재정적 및 기타 비용을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통역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 항소 및 판결 번복을 처리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역사 제공이 지연되면 이는 종종 여러번의 재판 연기라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법원 직원의 시간과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됩니다. 또한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판사와 배심원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피해자, 증인 및 피고들을 자기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사실상 격리시키며, 공공의 안전과 아동복지 및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또다시 막대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과거에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AOC에는 비영어권출신 (LEP) 개인들의 법원소송절차 이용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권국은 비영어권출신 (LEP) 개인들에게 언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 법원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연방보조금 자원표를 작성하여 귀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민권국은 효과적인 언어사용정책의 개발과원격통역 등 비용절감대책활용에 대한 기술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범사례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 다른 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AOC는 직원통역사 및 전화 통역사 계약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원 시스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조지아, 메인, 뉴욕 및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의 법원 시스템은 이러한 리소스 및 다른 리소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유사한 재정 제약에도 불구하고 비영어권출신 (LEP) 개인들에게 주 법원운영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사법시스템의 심장과 같으며, 언어 서비스는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로간주되어야합니다. 이런비용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의사소통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유발되는 항소, 판결 번복, 지연, 자유의 박탈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해에 관련된 비용과 비교할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통역사의 절실한 필요성을 인정하는판사님의3월 6일자 서신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선의의 원칙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사법부와 [우리] 사무소 사이에 오해 또는 의사소통의 실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정중히 알려 드립니다. 연방민권법 준수와 관련한 저희의 우려에 대해 판사님은 주법의 장벽 및 재정 제한으로 인해 통역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셨습니다. 주법이 우선하므로 연방 보조금의 수혜기관으로서 연방법에 따른민권법상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판사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음을정중하게 알려 드립니다. 규정준수에 대한 장벽으로서 인용하신 주법 조항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저희의 법적 입장에 대해서 좀더심도 있게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발적이며 포괄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절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연방법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할 것인지 여부를2012년 3월 29일까지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OC가 자발적 시정조치에 관심이 없거나, 자발적 수단에 의한 시정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미합중국은 제6장 (Title VI) 및 치안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합중국은 제6장 (Title VI), 이와 관련된 계약상의 합의, 연방보조금일시중단명령이나종료 모두를 가능케 하는 치안법 유형 또는 관행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합중국은 치안법 위반에 대해 공식결정 또는제6장(Title VI)에 의거자발적 수단에 의한 시정조치가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법무부 연방보조금의 회수,중지

또는종료를 명령할 수 있는행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저희는 연방보조금지원의 종료나 소송을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따라서AOC의 연방법 준수를 자발적으로 보장해 줄 이행합의서를체결할 수 있기를 계속선호할 것입니다. 다른 주 법원시스템과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유사한 사안들을 해결해 온 저희 입장으로는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또한 AOC가 미합중국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법무부 이외의 연방기관으로부터 연방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각 연방기관은그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제6장(Title VI)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HHS 민권국사무국에 이 통지문과 조사결과보고서 사본을 보냅니다.. 28 C.F.R. §§ 42.412, 50.3; Executive Order 12250, § 1-201,45 Fed. Reg. 72,995(1980년 11월 4일) 참조.

이 서신은 공적 문서이므로인권국 웹사이트에 게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 사안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연방 조정 및 규정준수와 책임자인 디나 장에게 (202) 307-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마스 E. 페레즈
법무차관

cc: 판사 사라 파커
대법원장
노스캐롤라이나 주 최고 법원
파멜라 위버 베스트
법률 부고문
법원 행정국

첨부